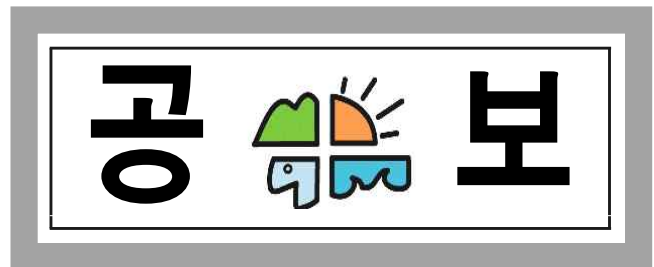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39호 2014년 2월 27일(목)

고 시

○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

「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2월 27일

속 초 시 장

1.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표

시내구간	• 기본 : 4km까지 1,100원 • 거리 : 4km초과시 1km당 100원 《시내버스 요금 2배 초과 금지》
시외구간	시외버스 요금의 2배
공통사항	• 시설이용료(통행료, 주차료 등) 및 대기료(30분당 2,000원) 이용자 부담 • 버스(택시)요금 인상시 연동 적용

2.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